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65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 박정현·서미화·허 영

박홍배 • 진선미 • 위성곤

이용우 · 민병덕 · 김한규

이광희 · 김현정 · 박지혜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제도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이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한 단순·반복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담당자의고초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 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률의 소기 목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정보 공개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기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4 조제2항).
- 나. 정보공개청구의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구체 화하여 명시함(안 제4조제3항).
- 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함(안 제6조의2).
- 라.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따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 킨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를 회유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이의 신청과 관련된 심의회 개최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마. 공공기관의 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 4 신설).
- 바. 공공기관의 사전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추가적으로 사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그 목록을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비하고,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함(안 제9조).

- 자.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 차. 공공기관이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조의3 및 제12조제1항).
- 카. 공공기관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및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비율을 타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함(안 제12조제3항).
- 타. 정보공개 청구 후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파.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및 단순·반복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 하.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

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거.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너. 정보의 허위 통지, 거짓 및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의 고의적 정보 공개, 공개 대상임을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정보공개 의무의 불복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0조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령"을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을 "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2.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사업침 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 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4.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5.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제6조의2 중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하는 행위
-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 3.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공 개를 거부하는 행위
- 4.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공개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3(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22 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따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 2. 정보공개 청구의 취하를 회유한 경우
 - 3.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 개최를 방해한 경우
- 제6조의4(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 인 등의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생활"을 "국민의 건강·안전 및 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사업평가·감사·연구용역 결과 및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방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정보.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를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개하되, 그 분리 및 제외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목, 생산·접수일,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 정보의 공개구분, 보존기한, 단위과제명 등이 포함된 문서의 목록
- 2. 정보의 보유 및 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과 이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항목명이 포함된 목록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 및 군사훈련 정보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그 직무수행"을 "정보로서 증언·변론 등을 방해하여 공정한 재판의진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항 제5호 본문 중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를 "사항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 2의2.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외국과 상호 합의한 정보 및 의사결정·내부검토 목적의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의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폭언 등을 수반한 청구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정보공개 여부 등"을 "정보공개 여부 및 제11조의3에 따른 업무 종결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후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심의회"를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를 "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22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한 경우
 - 2. 제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정 보를 공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한 경우
 - 3.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

서 공개를 거부한 경우

4. 제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4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
	승)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	②
무에 관하여 <u>법령</u> 의 범위에서	<u>정보의 공개가 원</u>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수 있다.	<u> 경</u>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③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u>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u>
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	리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u>집하거나 작성한</u> 정보에 대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	
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u><신 설></u>	1.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u><신 설></u>	2.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
	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
	위사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
	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
	직에 관한 정보
<u><신 설></u>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

<신 설>

<신 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 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에 관한 정보
- 4.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 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 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5.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관 련된 정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 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무) -----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하는 행위

<신 설>

<u><신</u>설>

<신 설>

-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고의 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 하는 행위
- 3.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

 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 4.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공개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 제6조의3(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에 대한 징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 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따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 2. 정보공개 청구의 취하를 회 유한 경우
 - 3.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관련된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를 방해한 경우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 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

- 제6조의4(정보공개 담당자의 보 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 공개 청구인 등의 폭언·폭행 ·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 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공기 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담당자의 요구 를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 담당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국회 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1.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생략)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신 설>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 하는 정보

② (생략)

,

- 2. (현행과 같음)
- 3. -----사업평가 · 감사 · 연구용역 결과 및 비 위행위를 한 공무원 · 임직원 에 대한 징계 결과(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 다)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 보 및 부패방지-----
- 4.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정보.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 원회는 제외한다.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
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
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
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
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 제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①
<u>다음 각 호의 정보</u> -
<u>이를</u>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개하되, 그 분리 및 제외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
<u>다</u> .
1. 제목, 생산·접수일, 담당 부
서 및 담당자명, 정보의 공개
<u>구분, 보존기한, 단위과제명</u>
<u>등이 포함된 문서의 목록</u> 2. 정보의 보유 및 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
템과 이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항목명이 포함된 목록
② (현행과 같음)
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1. (생략)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 설>

- 3. (생략)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u>정</u> 4. -----<u>정</u> 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	

- 1. (현행과 같음)
- 2.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 술, 무기 운용 및 군사훈련 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정보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

- 2의2.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 기로 외국과 상호 합의한 정 보 및 의사결정·내부검토 목 적의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 일 · 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현행과 같음)
- 보로서 증언 변론 등을 방해 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신 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alo vi	1 -1 .1	21 - 21	2 .1	- .
45	의2. 받	<u> 설죄의</u>	예방,	수사,	<u> </u>
	의 제	기 및	유지.	, 형의	집행,
	교정(知	喬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	될 경	우 그
	직무수	행을	현저	히 곤형	<u> 관하게</u>
	한다고	인정] 당할 1	만한 /	상당한
	이유기				
Ο.					
		- <u>사항의</u>	으로서		
				<단/	서 삭
	제>				
	<u> </u>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 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 8.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저

- ① (생 략)
-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u>다음</u>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
① (현행과 같음)	
②	
	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	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

를 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

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삭 제>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삭 제>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 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 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 도록 안내

<신 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5 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 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

제11조의3(폭언 등을 수반한 청 구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제1 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 구가 폭언·폭행·욕설·비방 • 협박 등을 수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 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정보공기	개심의호	1) 1		
	- <u>정보공</u>	<u>개 여</u>	부	<u>및</u>
제11조의3에	따른	업무	종	-결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한

처리 등
- .
② (현행과 같음)
③
<u><단서</u>
<u><단서</u>
<u><단서</u>
<u><단서</u>

<u>다.</u>

④ ~ ⑥ (생 략)

제17조(비용 부담)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생 략)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 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 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비용 부담)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후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
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
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정
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u>있다.</u>
<u>④</u> 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
승)
②

-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2. 단순 · 반복적인 청구
- 3. (생략)
- ③ · ④ (생 략)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 5. (생략) <신 설>
 -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 1.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

 - 2. -----청구로 인하 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 항-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 6. 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 한 조사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7. (현행 제 6호와 같음)

제23조의2(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통지한 경우
- 2. 제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한경우
- 3.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
 을 알면서 공개를 거부한 경우
- 4. 제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